

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4. 11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. 4. 12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5. 4. 25.(제12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환경위생과장 김용완)

가. 제안이유

- 2005. 4. 1차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소에서 처리하던 식품위생업무가 사회산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변경하고 감사의 명칭을 수정하며
-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중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, 감사의 명칭을 “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”로 수정함(안 제3조제3항 및 동조제6항)
- 회계관계공무원중 기금출납명령관을 보건소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, 기금출납 공무원을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명칭 수정(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제정건은 지난 2005. 4. 1 사하구 직제개편과 관련 식품위생업무가 보건소에서 사회산업국(환경위생과)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변경내용을 직제에 맞게 적의 조정함은 합리적 이라고 판단되며
- 특히 직제개편과 기금의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 명문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됨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